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3 호   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년 월 일 | 2006년 7월 10일<br>(제170회) |

##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발의년월일 | 2006. 7. 7 |
| 발 의 자 | 반광홍의원 외2인  |



##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06. 7. 7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3 |
|----------|---|

발 의 자 : 반광홍의원 외2인

### 1. 제 안 이 유

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예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·대체하여 기존 위원회의 심사 대상인 의원의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에 더불어, 금번에 제안한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한 의원의 윤리강령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 요 내 용

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 (안제2조제②항)

### 3. 개정 조례안 : 불 입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### 5. 참고사항 : 관련법령 발췌(붙임 참조)



## 6. 제안자 의견

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, 현행 조례상에 의원의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대체·변경 하므로써, 금번 제정하고자 제안한 음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(안)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는 바임.



##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○○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【위원회의 설치】 제②항 “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”를 “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(생략)<br>② <u>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<br><br>③~④(생략) | 제2조(위원회의설치) ①(현행과 같음)<br>② <u>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<br><br>③~④(현행과 같음) |



## 【 참고 사항 】

### 관련 법령 발췌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34조의3 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제50조 (위원회의 설치)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 <개정 1991.12.31, 2006.4.28>

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<개정 1991.12.31>

[시행일:2006.7.1] 제50조제2항

제50조의2 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[본조신설 2006.4.28]

제71조 (의원의 자격심사)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



**제72조 (자격상실의결)** ①제71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②피심의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**제78조 (징계의 사유)**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[개정 2006.4.28]

**제79조 (징계의 요구)**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. [개정 2006.4.28]

②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. [개정 2006.4.28]

**제80조 (징계의 종류 및 의결)**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3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4. 제명

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

**제81조 (징계에 관한 회의규칙)**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



## □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(현행)

제1조 【목적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위원회의 설치】 ① 의회는 재해대책,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 로써 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 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 한다.

제3조 【위원장】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다.



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 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.

제4조 【위원】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5조 【위원장의 직무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6조 【간사】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7조 【소위원회】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8조 【준용규정】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.

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